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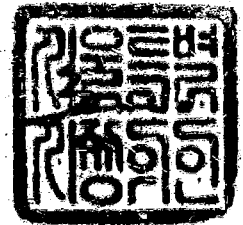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급수조달사업규칙중개정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시장

서울특별시장이 인



199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중 '제3종(시민주거용 급수)조정'을 '가정용조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규격외 구정에 대한 시설분담금) 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구경이 아닌 구경(이하 '규격외 구경'이라한다)의 급수관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 산출은 다음산식에 의한다. 이경우 양수기 구경·구경별 시설분담금 적용은 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textcircled{7} \text{의 시설분담금} = (\textcircled{4} \text{의 시설분담금} - \textcircled{5} \text{의 시설분담금})$$

$$\times \frac{\textcircled{7} \text{의 내경} - \textcircled{4} \text{의 내경}}{\textcircled{4} \text{의 내경} - \textcircled{5} \text{의 내경}} + \textcircled{4} \text{의 시설분담금}$$

※ $\textcircled{7}$: 규격외 급수관 구경

$\textcircled{4}$: 규격외 구정에 가장 가까운 양수기 구경중 큰구경

$\textcircled{5}$: 규격외 구정에 가장 가까운 양수기 구경중 작은구경

시장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2월이상 급수할 경우 조정월에 관계없이 매월말에 점검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초과하기전에 추가조정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급수관손료) ① 급수관손료는 급수사용료와 함께 조정한다.

②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의 급수관손료는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때 일괄 조정한다. 다만, 급수중지의 기간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연장신청전 까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관손료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급수관손료의 조정에 있어서 사용입수가 1월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19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탕용 2종
2. 영업용 2종
3. 영업용 1종
4. 공공용
5. 옥탕용 1종
6. 가정용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가정용요금적용) ① 조례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요금율 적용받고자 하는 급수장치 소유자는 가정용적용세대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사업소장(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는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요금 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정액검침분부터 적용한다.
2. 세대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세대수가 줄어든 날부터 두번째 월정액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례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율 적용받고자 하는 급수사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대분합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용급수전의 신고자는 공용급수전 관리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자에 대한 기본요금 및 급수관손료.

별표1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내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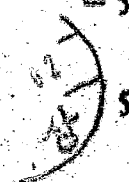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장

(별 표 1)

계절별 사용량 증감율표

납 기 별	전납기 기준 증감율 (%)
1 월	- 5
2 월	- 5
3 월	- 5
4 월	- 5
5 월	5
6 월	5
7 월	5
8 월	5
9 월	10
10 월	5
11 월	- 10
12 월	- 5



(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

처분대상	관련조문	처분내용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자.	조례 제34조 제1항	1. 가 정 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 급수를 도용하는등 조례 제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에 해당하는 자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함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	조례 제34조 제2항	1. 가 정 용: 250,000 원 2. 기타업종: 500,000 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 징수를 면한자.	조례 제34조 제3항	1. 가 정 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표중 처분대상 1내지 3의 과태료 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가정용적용세대신고서(신규, 변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주거·킴포 겸용수전용)

수용가번호							장래 검침입				수전 번호			
주소														
성명							전화 번호							
기주 세대 명부 (기재란 부족시 뒷면기재)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기 본인의 위 주거·킴포 겸용사용수전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가정용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영수증 1매(업무참고후 반환)

19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

(인)

동장 귀하

가정용적용세대신고서(신규, 변경)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고자성명 :

신청세대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주거·킴포 겸용사용수전 가정용적용세대분할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9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인)

※ 뒷면 유의사항 참조

기주 세대 명부 (앞면에서 계속)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민등록확인및기주조사

신고세대(세대)가 주민등록과 일치함을 확인함 확인자 직 : 성명 : (인)

신고세대(세대)가 앞면에 기재한 수전을 사용하며 실제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조사자 직 : 성명 : (인)

계	주 임	사 무 장	동 장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개의 양수기로 가정용과 다른 용도의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인1세대, 하숙생, 자취생, 등거인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용으로 전용 사용하는 수전은 제외됩니다)
2. 주거·점포 겸용사용수전에 대한 가정용요금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정용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가정용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받게 됩니다.

거주 세대 명부 (앞면에서 계속)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연번	세대주명	가족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민등록확인및거주조사

신고세대(세대)가 주민등록과 일치함을 확인함 확인자 직 : 성명 : (인)

신고세대(세대)가 앞면에 기재한 수전을 사용하며 실제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조사자 직 : 성명 : (인)

계	주 입	사무장	동 장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세대 이상이 1개의 양수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며 1인1세대, 하숙생, 자취생, 동거인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세대분할요금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세대분할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치분동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세대분할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받게 됩니다.

세대분합신고서 (신규, 변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공용급수전용)

수용가번호					정액 검침일			수진 번호		
주소										
성명					전화 번호					
거주 세대 명부 (기재란 부족시 뒷면기재)	연번	지번	세대주명	가족수	연번	지번	세대주명	가족수		
	1				2					
	3				4					
	5				6					
	7				8					

상기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공용급수전용 ()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니 세대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영수증 1매(업무참고후 반환)

19 년 월 일

신고자(관리인)

(인)

동장 귀하

세대분합신고서(신규, 변경) 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고자성명 :

신청세대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용급수전 급수사용료 세대분합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9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

성명:

(인)

* 뒷면 유의사항 참조

(뒷면)

거주 세대 명부 (앞면에서 계속)	연번	지 번	세대주명	가족수	연번	지 번	세대주명	가족수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민등록확인및거주조사

신고세대(세대)가 주민등록과 일치함을 확인함 확인자 직 : 성명 : (인)

신고세대(세대)가 앞면에 기재한 수전을 사용하며 실제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조사자 직 : 성명 : (인)

계	주 입	사 무 장	동 장

(유의사항)

- 이 요금은 2세대 이상이 공용급수전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하며 1인1세대, 자취생, 하숙생, 동거인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대분할요금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세대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세대 분할요금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할요금 적용은 신고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수도요금부터 받게 됩니다.